

제265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
관리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**



2022. 10. 24.

복지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33
----------	------

2023. 10. 24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10. 6.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9.
- 다. 상정일자 : 2023. 10. 23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김상희 의원

나. 개정이유

‘공공조형물’을 ‘공공미술’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함에 따라, ‘공공시설물’ 및 ‘공공조형물’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적용 혼란을 해소하고, 공공미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 :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⇒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나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
다. 다른 법령과의 관계(안 제3조)

- 라. 공공미술 설치신청 및 비용부담(안 제4~5조)
- 마. 설치대상 선정기준,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, 설치 부지면적(안 제6~8조)
- 바. 정보 공개 원칙 및 홈페이지 공개(안 제9~10조)
- 사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11~12조)
- 아. 공공미술 사업 신청에 대한 처리, 이의신청 등(안 제13~14조)
- 자. 관리 및 공공미술의 활용(안 제15~16조)

라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23. 10. 13. ~ 10. 19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- (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윤선영)

- 의안번호 제2133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」은 2023년 10월 6일 김상희 의원이 제안 하여 2023년 10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·회부된 안건임
- 본 안건은 기존 조례에 있는 ‘공공조형물’의 용어를 ‘공공미술’로 변경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통일성을 갖추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(목적)는 기존 조례의 목적 부분에 광진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함. 이는 상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부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“공공미술”과 “공공미술 사업”의 용어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음
 - ▶ “공공미술”이란 공원·도로·녹지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회화·조각·공예·사진·서예·벽화·미디어아트·분수대·폭포·동상·탑·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함
 - ▶ “공공미술 사업”이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, 이전, 형상변경 또는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함
 - ▶ 이 밖에 “교체”와 “철거”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
- 안 제9조(정보 공개 원칙)는 신설조항임. 구청장은 공공미술을 설치할 때는 구민들이 공공미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치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시설물명, 설치 일시, 시공업체, 관리부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 이는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

- 안 제10조(홈페이지 공개)는 주관부서가 공공미술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심의 의뢰 전 계획내용을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

→ 총괄부서는 공공미술을 설치한 후 각 공공미술에 연번을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

1. 설치일자
2. 위치 및 규격
3. 현황사진
4. 관리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

- 안 제15조(관리)에서는 기능상실 등의 문제가 생긴 공공미술 작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신설함

- ▶ 상태 점검 결과 기능상실 등 같은 문제가 2년 연속 시정 되지 않은 경우 철거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
- ▶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,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게 함
- ▶ 공공미술의 설치주체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 설치 시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의 생애주기를 설정할 수 있음
- ▶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음

이는 공공미술 작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

- 아울러, 부칙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에서는

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미술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을 하였거나 이미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함.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으로 필요하다고 보임

□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, 다음과 같음

▶ 조례 제정: 서울시 및 2개 자치구

공공미술 조례	공공조형물 조례	비고
2개 구(성북, 송파)	21개 구	

※ 공공조형물 및 공공미술 조례 미 제정: 종로구, 용산구

□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‘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’ 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
관련 내용으로는 ▲사후관리의 미흡 ▲공공미술의 무분별하고 불투명한 건립 ▲예산의 낭비 등을 지적함

- 이에 각 지자체는 자체별로 관련 조례 검토 및 개정 △공정성·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△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음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‘공공시설물’ 과 ‘공공조형물’ 의 용어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
-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공공미술 설치 시 관련 정보 표지판 의무제작, 공공미술 현황 홈페이지 등록 및 기능상실 등의 문제가 생긴 공공미술 작품의 체계적 관리 등이 신설되었음
-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부응 등 광진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미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조례 전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